

# 인명구조교육 관리규정

제정	2013	년	03	월	20	일
개정	2015	년	02	월	26	일
개정	2016	년	02	월	24	일
개정	2016	년	11	월	22	일
개정	2017	년	02	월	24	일
개정	2018	년	02	월	23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해양경찰청 고시(2017-1호)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및 평가관의 양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 이란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교육기관” 이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재난안전지도사”란 인명구조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인명구조강사”란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평가관” 이란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6. “자격증” 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 등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7. “교육전문강사”란 위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인명구조강사는 당 회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평가 중 수강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4조(상호업무의 협조)** ① 협회는 최종평가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자체 교차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을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협회는 평가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전문강사의 자격 및 관리)** ① 협회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교육전문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전문강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전문강사의 세부자격기준은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전문강사관의 구성)** ① 협회는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교육의 경우 인명구조강사 2명 이상, 재난안전지도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지도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 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인명구조강사 자격과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교육 · 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강사를 도와주는 별도의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생의 자격)** ① 인명구조교육을 받으려는 자의 최소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최소 자격기준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만16세 이상인자 (16세부터 18세 미만인 자 :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함)
2. 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 가능한 자
3. 잠영 10m 이상 가능한 자

② 협회는 교육실시 전 기초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수영 평가 시 최소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육인원)** ① 교육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의 교육인원은 20명内外로 한다. 단,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간신교육과 신규교육은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제1항의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전문강사의 구성은 제6조제1항과 같다.

**제9조(교육과정)** ① 인명구조요원의 교육과정은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명구조요원의 유효한 자격을 가진 자가 다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수상안전과 응급처치)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간신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중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되 실기(종합구조술 등)를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① 협회는 교육·평가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교육전문강사와 교육생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평가과목 및 평가기준 등)** ① 교육과정별 평가과목 및 배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요원

출석 및 태도(5%), 이론평가(20%), 응급처치(25%), 구조영법(20%), 종합구조(30%)

2. 인명구조강사

출석 및 태도(10%), 이론평가(30%), 강의능력평가(10%), 실기시범평가(10%), 실기능력평가(40%)

3. 평가관

출석 및 태도(10%), 이론평가(30%), 교육규정평가(20%), 강의부분채점평가(20%), 실기부분채점평가(20%)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결과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요원은 평균 70점 이상, 인명구조강사와 평가관은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전체교육과정 불참률이 10% 이상인 교육생과 전체교육과정 불참률이 10% 미만이더라도 세부교육과정 중 미이수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협회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자의 이론평가문제 유출 등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종사자를 교체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과정별 세부평가기준은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12조(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자격증은 총재명의로 발급한다.

②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증(재교부 포함) 발급신청서

2. 교육생 명단

3. 평가채점표

4. 교육생 출석부

③ 협회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 제13조(자격증의 발급)** ①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강사의 자격증 발급나이를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 ② 만16세부터 만18세 미만인 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교육 이수증을 받은 자는 만18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받은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③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자격증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한다.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갱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갱신 교부받아야 한다.

⑤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갱신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의 사유로 자격증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자는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에서 정한 자격증교부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제6항의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증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게 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받은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해양경찰청 지정 여타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도 우리 협회에서 갱신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①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ISO 7810 준용 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

2. 두께 : 0.78 ~ 0.80mm

②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인명구조 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1.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강사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Instructor)

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

③ 제2항 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자격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 평가일정 등의 제출)** 협회는 연간 교육계획(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 전문강사의 명단 포함)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서류의 보관)** ① 협회는 교육 ·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사무소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계획서
2. 수강신청서 대장
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
4. 회차별 교육일정표 · 교육생 명단 · 출석부
5.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
6.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
7. 회차별 교육전문강사 명단과 이력관리대장
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
9. 회차별 교육장소(수영장 포함)의 시설증빙서류
10. 자격증 갱신·교부연기(사전갱신·교부) 신청서와 증빙서류

② 제1호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의하여 비치 ·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자격의 발급과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인명구조교육 관리규정 등에 의해 시행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8. 0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인명구조교육 관리규정 등에 의해 시행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